

성과보상위원회 규정

주식회사 알루코
제정 2017. 3. 31

설치: 주식회사 알루코 이사회

구성: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1 인 이상 이어야 함.

참석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자

위원장: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 이사. 위원장 부재시, 임시위원장은 출석위원들이 지명함.

임기: 최대 3 년

회의: 연 1 회 이상.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가능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간사: 인사본부장 또는 그가 지명한자. 간사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내역을 서류로 보존하여야 함.

위원회 직무

1. 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평가와 심의
2. 성과보상제도가 재무성과 및 관련된 리스크와 연계되도록 의사결정
3. 임원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급여, 성과급, 퇴직위로금 포함)의 제안과 결정
4.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이사보수 한도의 결정
5. 이사회에서 성과보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성과보상위원회는 논의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위원은 본인의 보상과 관련된 결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